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0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 정청래·권인숙·김남국

김상희 · 송갑석 · 송영길

오영환 • 이수진 • 임오경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소관 및 유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취득한 정보, 압박, 부당한 영향력 등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은 그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이해충돌의 우

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국회법」 제40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의 직 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 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155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비경제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5조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18.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2(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
	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
	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직자윤리
	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
	<u>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u>
	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u>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u>
제155조(징계) (생 략)	제155조(징계)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4. 제40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u>
<u>4.</u> ~ <u>16.</u> (생 략)	<u>5.</u> ~ <u>17.</u>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8.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u>
	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를 위반하였을 때